

국내산 축산물이력제 신규이행대상자 안내!



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축산물 제공을 위해,
2020년 1월 1일부터 축산물이력제 이행대상자가 확대됩니다.

국내산 축산물이력제 신규이행대상자는 누구인가요?

- 1 영업장 면적 700㎡ 이상인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 영업자
- 2 「학교급식법」제 4조에 따른 대상 학교의 위탁급식영업소 및 집단급식소 설치·운영자
- 3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통신판매업자

신규이행대상자 준수사항은 무엇인가요?

- 판매하고 있는 이력관리대상축산물*에 대하여 **이력번호를 표시**하고 **게시**하여야 합니다.
 - 발급받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를 거래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합니다.
- *이력관리대상축산물이란? 국내산 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, 오리고기, 계란(가정용), 수입산 쇠고기, 돼지고기 (가공육, 양념육, 소시지류, 베이컨류, 부산물은 이력관리 대상이 아닙니다)

언제부터 이행하면 되나요?

- **2020년 1월 1일부터**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.(수입산이력축산물은 기시행 중)
- ※ 관련 법률 :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(제18조 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)

제도관련 문의사항

- ① 홈페이지 : 국내산 축산물 이력제 www.mtrace.go.kr / 수입산 축산물 이력제 www.meatwatch.go.kr
- ② 전화문의 :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 1577-2633 /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콜센터 1688-0026



농림축산식품부



농림축산검역본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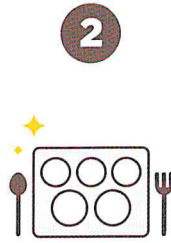
축산물품질평가원

이행
대상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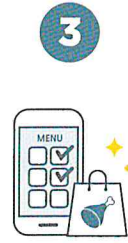
1
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
(영업장 면적 700㎡ 이상)

-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5조 관련 -



2
학교의집단급식소
설치·운영자

-「학교급식법」 제4조 관련 -



3
통신판매업자

-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
관한 법률」 제 12조 관련 -

표시
기한

상품 판매·제공 시 부터
소진 시 까지 게시
※ 공급받은 일자 기준 7일
이내에는 모든 상품 게시 필수

급식일을 기준으로
7일 이내 게시 또는 표시

전자매체의 경우 상품이
화면에 표시되는 시점

표시
방법

게시판 또는 인터넷 게시(보기 중 하나의 방법으로 표기)

- ① 메뉴판 또는 메뉴게시판
- ② 거래명세서 또는 거래영수증
- ③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(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)
- ④ 이력관리대상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출력물
- ⑤ 별도 게시판 또는 팸말
- ⑥ 인터넷 홈페이지(해당 영업장 정보가 포함된 홈페이지)
- ⑦ 제품 표시사항을 포함한 스티커 또는 라벨(축산물 위생관리법)

통신판매 수단을 통하여
'이력번호 표시 제품임'을
고지하고 배송상품에
해당 이력번호를 표시

표시문구 예시

'이력번호 표시제품임',
'이력번호는 배송된 상품에 표시됨'

주의
사항

☑ 위 표시방법 외의 방법으로
게시하는 경우

- ① 계산대 ② 출입문 주변
- ③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
알아볼 수 있는 장소

☑ 영업자가 공급받은 축산물
모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

음식으로 판매·제공할 때
게시해야 합니다.

☑ 인터넷 홈페이지 등*을
통하여 이력번호를 조회 할 수
있는 경우에는 이력번호 게시
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.

* 학교 홈페이지 등 학교명이
포함된 곳만 해당

☑ 문자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

원산지 표시정보 주위에 자막,
별도 칸 등을 이용하여 '이력번호
표시 제품임'을 표시해야 합니다.

☑ 문자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

설명 방법 : 말의 속도 및 소리의
크기는 상품 설명과 동일하게 하고,
반복적으로 설명(1회 2번이상)

설명문구 예시

본 상품은 이력번호가 표시된 제품이며,
이력번호는 배송되는 상품에 표시됩니다.

이력번호와 게시 또는 표시 방법

※ 이력번호가 다른 2개 이상의 축산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든 이력번호를 다 표시하여야 합니다.